「코로나19(COVID-19)」 관련

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(5판)

2021. 9. 1.

고용노동부

산업안전보건본부
산재예방지원과

1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치사항

□ 직무교육

○ **(이수기간 유예)** 사업주가 **직무교육 대상자***에게 실시해야하는 **직무교육**의 경우 **이수기간**을 **'22.6.30.**까지 **유예**(과태료 면제)

* '21.6.10. 이후 ①안전·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(위촉 포함)되거나 채용된 자 및 ②보수교육 대상자(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초과자)

- 다만, **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희망**하는 경우, **이수기간을 유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** 경우 등에는 **방역수칙**을 **준수**하여 **교육**을 **실시**하도록 **권고**

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**법정 이수기간 만료일***이 **'22.6.30. 이후**인 경우 **법정 이수기간 만료일**을 따름

* 안전·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(위촉 포함)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(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개월) 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3개월
↳ 예시) '22.6.1.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'22.9.1.

□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

○ **(근로자)**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 정기교육 시 각 사업장의 **업종·작업 특성**을 **고려**한 **맞춤형 교육**을 하되, **방역수칙**을 **준수**하여 실시

○ **(관리감독자)** 사업주가 **관리감독자***에게 교육시간의 절반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방법으로 실시해야하는 **정기교육**의 경우

* '21.6.10. 이후 정기교육을 받아야하는 관리감독자

- **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**하여, 나머지 **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**을 **'22.6.30.**까지 **유예**(과태료 면제)

□ 기타 사항

○ **(기본인력 강의 점검 유예) 고용노동(지)청**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**점검** 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**기본인력**에 대한 **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**을 **'22.6.30.**까지 **유예**

○ **(교육일정 조정)** 직무교육기관은 특정 기간에 **교육일정**이 **집중되지 않도록** 안전보건공단에 **교육일정 변경**을 **요청**하고,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**직무교육 일정 조정**

○ **(평가시 불이익 금지)** 안전보건공단은 기관 **평가** 시 코로나19로 인한 「감염병 재난」 상황을 고려하여 **직무교육 취소나 연기** 등의 사유로 **직무교육기관**이 **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**

[참고] 교육대상별·교육유형별 안전보건교육 최저 시간

구분		신규교육	정기교육 / 보수교육	작업내용 변경 시 (1회)	특별교육 (1회)
근로자	일반	▸ 8시간	▸ (일반) 분기별 6시간 ▸ (사무직) 분기별 3시간	▸ 2시간	▸ (일반)16시간 ▸ (단기간·간헐적 작업) 2시간
	일용	▸(일반) 1시간 ▸(건설업) 4시간	-	▸ 1시간	▸ (일반) 2시간 ▸ (타워크레인 신호 업무) 8시간
	관리감독자	-	▸ 연 16시간	-	-
안전보건 업무 담당자	안전보건관리 책임자	▸ 6시간 이상	▸ 6시간 이상(2년 주기)	-	-
	안전관리자/ 보건관리자	▸ 34시간 이상	▸ 24시간 이상(2년 주기)	-	-
	안전보건 관리담당자	-	▸ 8시간 이상(2년 주기)	-	-
특수형태 근로종사자	일반	▸ 2시간	-	-	▸ 16시간
	단기·간헐	▸ 1시간	-	-	▸ 2시간

2 안전보건교육 시 방역 관리 방안

※ 출처: '21.7.19., 「코로나19(COVID-19)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(사업장용)」에서 교육기관이 활용할 수 있게 발췌하여 정리

□ 공통사항
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■ 500인 이상 참여 시 지자체 사전 신고	■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**소규모 (100인 미만)로 실시**	■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**소규모 (50인 미만)로 실시**	■ 워크숍, 연수 등 행사 대면 실시 금지

* 다만,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은 좌석 2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6㎡당 1명 등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 가능

○ 사업주는 근로자·관리감독자 교육을 **집체교육**으로 하려는 경우,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**위탁**하기보다는 **사업장 자체실시**

○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방역담당자는 교육장에 **감염병 예방 수칙 안내문**을 **부착**하고 **손 세정제** 및 **마스크**를 **비치**

- 교육장을 주기적으로 소독(일 1회이상) 및 환기(일 2회 이상)

- 교육 참석자에게 **교육전 개인위생 실천방안**(손 소독, 마스크 착용, 기침예절 등)을 **안내**한 후 **준수 여부**를 시간대별 **확인**

○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방역 담당자는 **자율점검표**(붙임1)를 **활용**하여 매일 **방역 관련 점검**을 자체적으로 실시

○ **집체교육 및 현장교육** 시 「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(사업장용)」 등에서 규정하는 **방역수칙***을 **준수**

* 발열(37.5℃이상) 확인, 출입자명부 작성, 마스크 착용, 손소독제 비치,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,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, 음식섭취 자제(물, 무알콜 음료 제외)

- 교육 참석자가 **방역수칙**을 철저히 **준수**하도록 **지도, 위반 시 처벌 및 불이익 발생**(붙임2)* 안내

*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과태료와 벌금 부과 가능
②근로자 본인 과실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발생시 불이익 발생 가능

- 강의실 **공간**이 **부족**할 경우 다른 시간대(오전·오후 등)에 **교육과정**을 **추가**로 **편성**하거나 **교육장소**를 **별도**로 **마련**하여 실시

-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**행동 요령**(붙임3)에 따라 **신속히 조치**

□ 안전보건교육기관

○ **(사전안내) 교육시작**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관련 **손소독, 마스크** 착용, 기침 예절 등 **개인 위생관리**에 대한 **교육**을 반드시 실시(붙임4)

○ **(유증상자)** 교육기관은 교육기관 내 **코로나19 의심환자***(교육생, 교육기관 종사자, 방문자 등 포함)를 확인한 경우 해당 의심환자에게 **마스크**를 **착용**시키고 다른 사람과 **격리 조치**(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등)

* 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 상실 등이 있는 자

- 교육기관에 있는 **모든 사람**(교육생, 교육기관 종사자, 방문자 등)을 대상으로 **개인위생 관리**(마스크 착용 등) 조치 및 **상호접촉 자제** 안내

- 이후, **방역당국**에 **연락***하여 방역당국의 **지시**에 따라 사업장 **소독, 코로나19 검사** 등 **조치**를 적극 이행

* 질병관리본부 콜센터(1339), 지역번호 + 120 및 관할 보건소로 연락

○ **(확진환자)** 교육생, 교육기관 종사자 및 방문자 중 **확진환자 발생** 시 교육기관은 방역당국의 **역학조사, 사업장 소독, 코로나19 검사** 등 **조치**에 적극 협조·이행

- 교육기관은 **확진환자와 동선이 겹치는** 교육생, 교육기관 종사자, 방문자 등에게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**상황 전파, 코로나19 검사** 등 **조치**를 적극 이행

○ **(교육생 출결 관리)** 교육기관은 **확진환자** 또는 **확진환자**와 **접촉**한 **교육생**이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격리를 한 경우 **격리기간** 등에 대해서는 **출석**(교육 수강)으로 **인정**

3 감독 · 점검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

○ **(원칙)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**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에 대한 **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**을 **충분히 알고 있는지**를 통해 확인

○ **(심층 인터뷰 등) 근로자가 사전 예방조치**(안전·보건조치 등)와 **사후 피해 방지조치**(대피요령 등) **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**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**심층 인터뷰**를 통해 **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***

* 대부분의 근로자가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 등 생략 가능

- 심층 인터뷰*는 **무작위로 선정한 근로자**를 **대상**으로 실시,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**근로자 대부분이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실시 불인정**** → **과태료 부과**

* 교육 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이나 그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사항, 교육 강사나 교육 장소 등에 대해 질의

** 근로자가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도, 사업주가 교육실시 여부를 소명하는 경우 이를 검증하여 교육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

4 시행시기

○ **(시행시기)** '21.9.1.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

붙임 1 **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율 점검표**

□ 사업장(교육기관) 개요

사업장 및 교육기관 명칭			
주 소		연 락 처	
대 표		근로자수(남/여)	명(/)

□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점검표

항목		점검결과	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(필요시 별지 활용)
훈련 환경 및 방역 상태	1) 예방안전수칙(코로나 19 예방수칙) 안내문을 부착하였는지 여부	□ 예 □ 아니오	
	2) 매일 근로자에 대한 비접촉식 체온 측정 실시 여부	□ 예 □ 아니오	
	3) 근로자외 방문자에 대한 방명록 작성 여부	□ 예 □ 아니오	
	4) 교육장 책상 배치 및 근로자 간 일정 거리 유지 (두자리 띄어 앉기)	□ 예 □ 아니오	
의심 증상 모니터링 등	1) 출결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자체 발열(37.5℃이상 여부) 모니터링 실시·기록(1일 2회 이상)	□ 예 □ 아니오	
	2) 발열(37.5℃이상)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있는 근로자 귀가조치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	□ 예 □ 아니오	
	3) 발열체크(1일 2회 이상) 등을 통하여 교육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귀가하도록 조치하는지 여부	□ 예 □ 아니오	
위생·청결 관리	1)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, 마스크 착용 준수, 손세정제 비치, 개인용 컵·식기·티스푼 사용 등 개인위생 관리	□ 예 □ 아니오	
	2) 구내식당 이용시 감염 예방을 위한 식탁 배치 또는 개인 간 거리 유지 등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기, 식사 시 대화 자제	□ 예 □ 아니오	
	3) 교육장 및 교육장비 등을 자주 소독하고,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 유지 등 자체 방역 실시 여부	□ 예 □ 아니오	
	4) 교육 시 기침 예절 준수,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 금지	□ 예 □ 아니오	

※ 점검결과 "아니오"의 경우 **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조치 작성**

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	

2021 . .

사업장명(교육기관) 명: 성 명 (인)

대 표 자 명: 성 명 (인)

붙임 2 **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(중앙재난안전대책수습본부 '21.7.1)**

<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>

○ **법적근거,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**

- **(법적근거)** 감염병예방법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, 제83조(과태료)
- **(행정명령기간)**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**"경계·심각" 단계**에서 **행정명령권자**(보건복지부장관,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)**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**
- **(과태료 부과) 계도기간 1개월**('20.10.13.~'20.11.12.) 후 **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**
 ※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**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**, **불이행시 과태료 부과**
- **(과태료 금액)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,**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(1차 150만원, 2차 이상 300만원)

○ **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·대상**

- **(착용 의무)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**
 * 실내란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
- **(관리 의무)**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**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** 의무 (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)

○ **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**

- **(마스크 종류) 식약처에서 '의약외품' 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(**KF94, KF80 등), **비말차단용 마스크**(KF-AD), **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,** 그 외 천·면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 가능
 *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
- **(착용법)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**
 *****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

○ **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**

예외 대상	• **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** • 뇌병변·발달장애인 등 **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** • 호흡기질환 등 **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**
예외 상황	•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※ 단, 실외에서도 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·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• 집,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•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•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•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•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 안에 있을 때 •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•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•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사진 촬영(임명식, 협약식,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(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, 협약식 당사자 등) 최소한으로 한정), 수어통역을 할 때 •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 •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•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(예: 항공기 조종사 등) • 원활한 공무수행(외교, 국방, 수사, 구조,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)을 위해 필요한 경우

붙임 3

코로나19 의심환자* 발생 시 행동 요령(예시)

* 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 상실 등이 있는 자

교육기관 내 코로나19 의심환자(교육생, 교육기관 근로자, 방문자 등)가 확인된 경우

↓

즉시 해당 의심환자에게 **마스크**를 **착용**시키고 다른 사람과 **격리 조치**(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등)

↓

질병관리본부 콜센터 **1339,**
지역번호+120 또는 **관할 보건소**로 상담

↓

의심환자 외 교육기관 내 모든 교육생, 교육기관 근로자 및 방문자 대상으로 **개인위생 관리**(마스크 착용 등) 및 **상호접촉 자제**

↓

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
의심환자 격리, 역학조사, 사업장 소독, 코로나19 검사 등 **적극 이행**
(방역당국의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다면 의심증상자는 즉시 귀가)

[의심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할 경우]

*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건당국의 조치(격리 등)에 따름

검사 결과: 음성인 경우

↓

일상 복귀

검사 결과: 양성(확진)인 경우

↓

❶ 방역당국의 조치 사항(입원, 격리 등)에 협조·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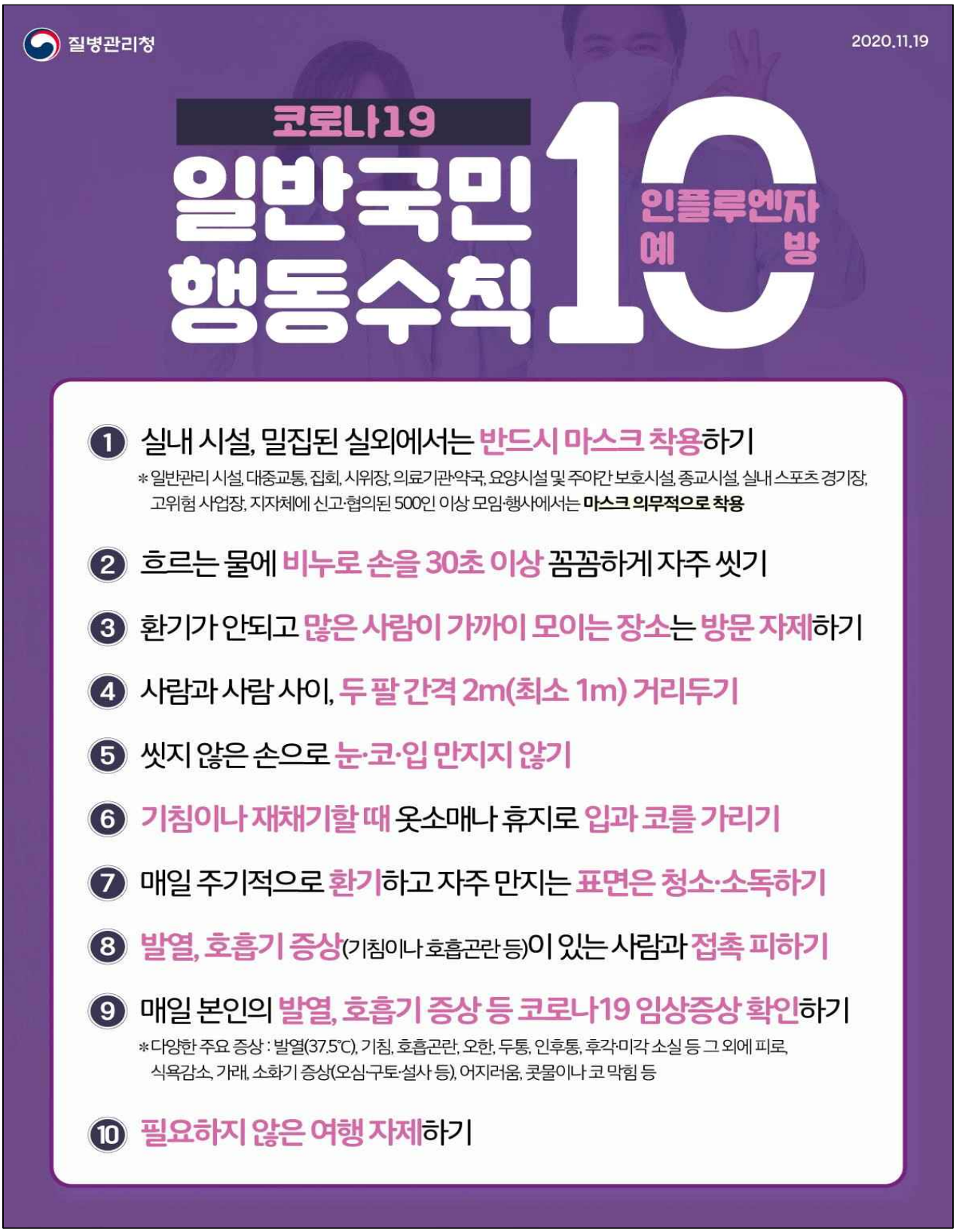
❷ 사업장 내 상황 전파
(교육생, 교육기관 근로자, 방문자 등 포함)

❸ 확진 환자와 접촉한 시람의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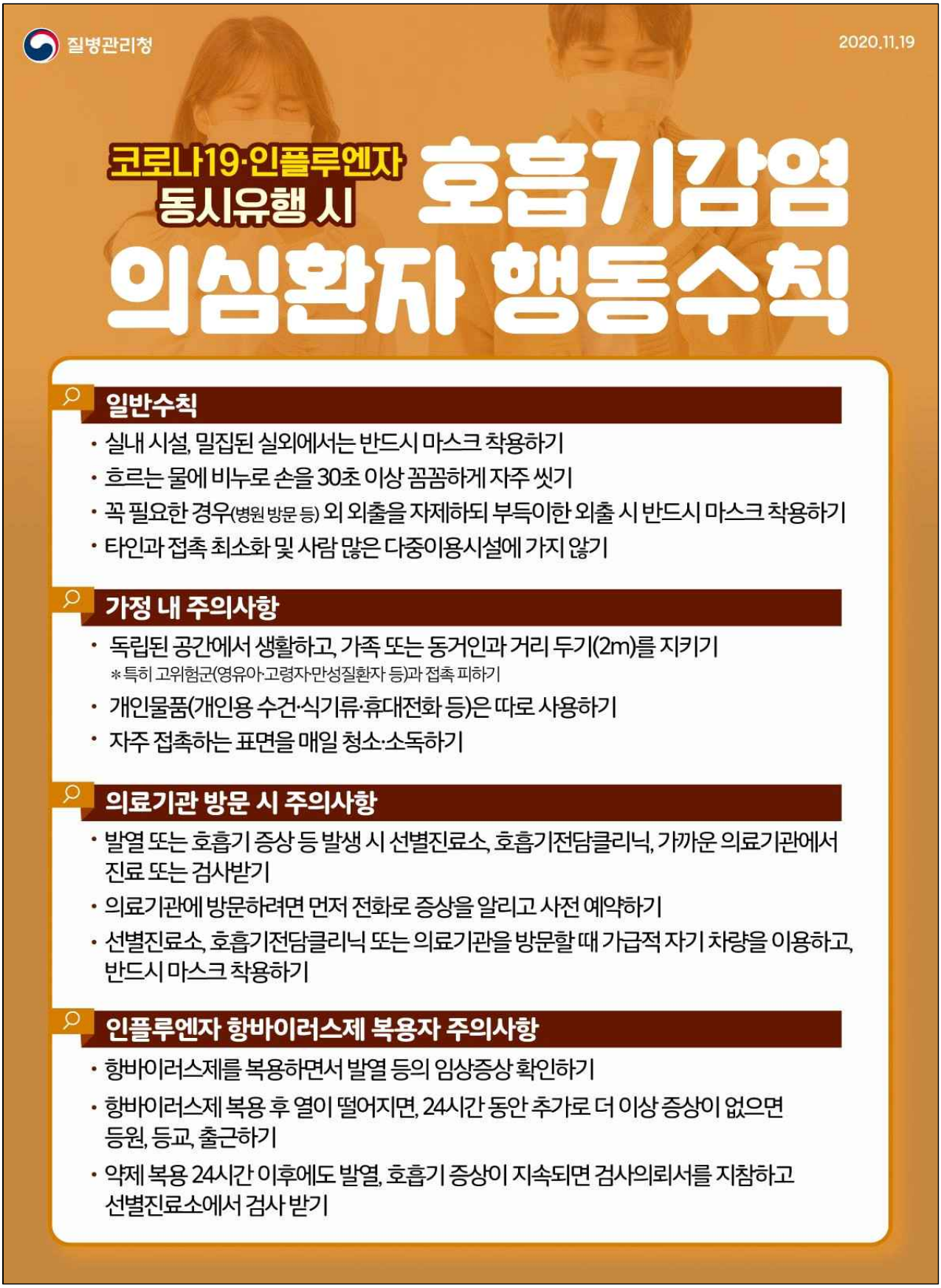
※ 코로나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

붙임 4 | **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(포스터 포함)**

□ 일반국민 행동수칙



□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



□ 마스크 착용(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)

질병관리청

2021.4.26.

마스크 착용!

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



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.

" 마스크, 반드시 착용하세요! "

실내
- 상시 마스크 착용

실외
- 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 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
-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



마스크,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!

올바른 마스크 착용법

- ✓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

※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,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

착용 가능한 마스크의 종류

- ✓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 등), 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 및 수술용 마스크
- ✓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·면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

※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